

선	기관국장
람	

제1708호 2022. 11. 7.(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7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 29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4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5호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결과 공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8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5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34호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 예정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59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2. 공유재산의 다음 각 목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

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급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을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 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 중 “영 제34조”를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기업을 서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제50조제1호 중 “관사 : 부구청장”을 “관사 : 구청장”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없으면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부재시”를 “부재 시”로 한다.

6.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육성팀장”을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실문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하로”를 “10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위원이”를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

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재사용종량제)
10	33×56.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36×53.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45×65.3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75	65×103.5	공공용봉투

-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underline{\text{가로길이(cm)}} + 5\text{cm}$$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가정사업계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60 ℓ , 15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60 ℓ 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O O O 또는 O O O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 오니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60 ℓ :15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010-0000-0000)

서구 시설관리공단(☎ 010-0000-0000)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3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ℓ	160원	12원	148원
		10ℓ	310원	25원	285원
		20ℓ	620원	49원	571원
		50ℓ	1,540원	123원	1,417원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	5ℓ	160원	12원	148원
		10ℓ	310원	25원	285원
		20ℓ	620원	49원	571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ℓ	1,870원	150원	1,720원
		60ℓ	3,710원	290원	3,420원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AA2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대방개발기업(주) (대표 임종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아이비프라자 509호]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0블록
 - 나. 대지면적: 38,082㎡
 - 다. 사업규모: 연면적 140,100.0133㎡
 - 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7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마. 사업비: 350,473,878천원
4. 사업기간: 2023. 3. 1. ~ 2026. 3. 17.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44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98-5, -23번지

3.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 심곡동 · 공촌동 일원	556,431.8	-	556,431.8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C)(변경)

기 정							변 경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C	64	6,733.0	1	554.2	554.2		C	64	6,733.0	1	554.2	554.2	
			2	765.3	765.3					2	765.3	765.3	
			3	155.1	155.1					3	155.1	155.1	
			4	457.1	457.1					4	457.1	457.1	
			5-1	264.3	264.3					5-1	264.3	264.3	
			5-2	264.4	264.4					5-2	264.4	264.4	
			5-3	231.0	231.0					5-3	231.0	231.0	
			5-4	232.3	232.3					5-4	232.3	232.3	
			5-5	241.9	241.9					5-5	241.9	241.9	
			6-1	233.9	233.9					6-1	586.6	586.6	
			6-2	352.7	352.7								
			7-1	594.1	594.1					7-1	594.1	594.1	
			8	593.8	593.8					8	593.8	593.8	
			9-2	593.5	593.5					9-2	593.5	593.5	
			9-3	593.5	593.5					9-3	593.5	593.5	
9-4	605.9	605.9	9-4	605.9	605.9								

- 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64	6-1	233.9	6-1	586.6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6-2	352.7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 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45호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0-5, -6번지

3.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왕길동· 당하동 일원	999,838.6	-	999,838.6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B-1)(변경)

기 정							변 경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B-1	71	3,538.1	1	287.6	287.6		B-1	71	3,538.1	1	287.6	287.6	
			2	301.3	301.3					2	301.3	301.3	
			3	356.1	356.1					3	356.1	356.1	
			5	257.7	257.7					5	413.6	413.6	
			6	155.9	155.9								
			8	304.1	304.1					8	304.1	304.1	
			10	362.2	362.2					10	362.2	362.2	
			11	475.9	475.9					11	475.9	475.9	
			12	276.6	276.6					12	276.6	276.6	
			13	232.1	232.1					13	232.1	232.1	
			14	231.7	231.7					14	231.7	231.7	
			15	296.9	296.9					15	296.9	296.9	

- 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71	5	257.7	5	413.6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6	155.9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 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542번안길 7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1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평동 600-5	인천광역시 서구 월곡로542번안길 7 (가평동)	20121025	월곡로54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학동 272-8	인천광역시 서구 신철밭로28번길 42 (가학동)	20090922	신철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4-4, 184-5	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36번길 12 (석남동)	20090922	울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리동 92-5	인천광역시 서구 청리사피어로 192 (청리동)	20140804	청리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경관특성과 계획에 의거 사피어에서 착안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1-189	인천광역시 서구 함동로 10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함동로라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59 (당하동)	20200420	신도시와 구도심, 환경과 시립의 이름에서 착안.	(김단신도시 콘셉 3-2-5분류)
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50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길 11 (대곡동)	20201123	논 골짜기 옛 지명에서 착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27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2길 14 (대곡동)	20201123	금사래길의 서점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35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길 15 (대곡동)	20201123	논 골짜기 옛 지명에서 착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37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길 19 (대곡동)	20201123	논 골짜기 옛 지명에서 착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함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발산로 27 (함당동)	20200720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발산로라 명명	선우브라자 (김단신도시 C11-3-2)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학동 606-20	인천광역시 서구 범곡로 333 (가학동)	20090706	옛 주민발전 방송을 따라 도로가 개설된 데서 연유하여 제명	
13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5-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94번길 40 (공촌동)	20090922	심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미전동 912-4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78번안길 12 (미전동)	20081231	원정로17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신원동 85-3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154 (신원동)	20090922	원정동의 동명을 딴 원정동은 조선시대에 배반으로 율리온 세곡을 혁파하고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배안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0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따른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골목형상점가명	상인회(대표)	위 치	규모	결과
청마로 골목형상점가	청마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이지훈)	청마로 175 ~ 청마로167번안길 23 일원	- 총면적 4,451㎡ - 점포수 67개	지정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1.1.시행)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 나.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다. ‘별표1’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별표1) 자치행정국장 → 회계업무담당국장
세무1·2과 → 지방세업무
기획예산실장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재무과 → 회계업무담당과장
- 라. 지출 절차 세부사항 변경 (안 제7조)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8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58, FAX (032)560-272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1.1.시행)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 나.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다. ‘별표1’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별표1) 자치행정국장 → 회계업무담당국장
세무1·2과 → 지방세업무
기획예산실장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재무과 → 회계업무담당과장
- 라. 지출 절차 세부사항 변경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해당없음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집행”을 “2억원 이하의 집행”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로, “처리 할”을 “처리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수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 세외수입업무 주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지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서무업무담당	-	각 과·지소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서무업무담당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실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p> <p>②·③ (생략)</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u>규칙 제22조</u></p>	<p><u>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2억원 이하의 집행-----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u>훈령 제12조</u></p>

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물건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3항-----
-----.

제7조(지출의 절차) ① -----

----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처리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략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22.11.07.~11.28.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22.11.07.~11.28.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028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2.1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
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후 재등록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2년 11월 7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토지정보과민원전용	기관장인	2.4cm x 2.4cm	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후 재등록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토지정보과민원전용2	기관장인	2.4cm x 2.4cm	검단지역 부동산 관련 업무처리에 따른 공인 등록	
3	인천광역시서구청정보통신담당관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4	인천광역시서구청정보통신담당관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5	인천광역시서구청정보통신담당관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6	인천광역시서구청정보통신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7	인천광역시서구청정보통신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8	인천광역시서구청주택관리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9	인천광역시서구청주택관리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10	인천광역시서구청주택관리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11	인천광역시서구청주택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12	인천광역시서구청주택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폐기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토지정보과민원전용	기관장인	2.4cm x 2.4cm	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2	인천광역시서구소통협력담당관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3	인천광역시서구소통협력담당관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4	인천광역시서구소통협력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5	인천광역시서구소통협력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6	인천광역시서구소통협력담당관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7	인천광역시서구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8	인천광역시서구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9	인천광역시서구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10	인천광역시서구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11	인천광역시서구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토지정보과민원전용	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후 재등록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토지정보과민원전용2	검단지역 부동산 관련 업무처리에 따른 공인 등록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정보통신담당관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정보통신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정보통신담당관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정보통신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정보통신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주택관리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주택관리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주택관리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주택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주택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022년 11월 7일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토지정보과민원전용	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소통협력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소통협력담당관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소통협력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소통협력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소통협력담당관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034호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3항,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공람·공고 목적

인천광역시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II.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요

1. 주민공람

가. 공람기간 : 2022. 11. 7.(월) ~ 2022. 12. 14.(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3층 [☎032-560-4595]

다. 공람내용

-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 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세대수
- 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라.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서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붙임] 공람의견서 제출

2.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2. 11. 30.(수) 14:00 ~ 16:00

나. 장 소 : 인천 서구문화회관 내 가정생활문화센터(공연장)

다. 내 용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 등
추진절차

Ⅲ.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소규모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다. 면 적 : 4,060.9m²

※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 공람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연락처	
	주소			
◇ 제출의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 및 그 밖에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공람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